

서 면 답 변 서

- 질의 의원 : 방 종 영 의원
- 답변공무원 : 문화체육과장
- 질의 요지 : 휠체어테니스단 창단 관련서류 서면제출

□ 답변내용

- 문화체육과장 김 재환입니다.
- 방종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달성군휠체어 테니스단 창단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 달성군청 장애인 휠체어테니스단 창단계획
- 달성군청 휠체어 테니스단 창단식 행사계획
- 대구광역시달성군휠체어테니스단관리운영지침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6년 9월 21일

문화체육과장 김 재 환 (인)

문서번호	문화체육과-3750
생산년도	2006. 5. 8
보존년한	3년

담당자	과 장	국 장	부군수	군 수	결
배두현	김세환		이병국	김영준	재
협조	총무과장 김치식 서무담당 김민하 인사담당 변수목 체육담당 안영현	기획감사담당관 김재 기획담당 김재 예산담당 이영하			

達 城 郡 廳

障 碍 人 휠체어테니스단 創團 計劃



達

城

郡



원본대조필



障 碍 人 휠체어 테니스단 創團計劃

달성군청 휠체어 테니스단을 창단하여 장애인스포츠 활동 육성을 통한 지역장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내외 휠체어 테니스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영남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높아진 달성의 위상을 대내외로 알리고자 함

창단의 필요성

- 사회전반에 걸친 장애인 육성사업에 대한 관심도 증대
- 장애인스포츠 활동 육성을 통한 지역장애인들의 자긍심 고취
- 지역체육의 특성화를 통한 우리 군의 장애인 복지시책 다변화 도모
- 국·내외 휠체어 테니스대회 참가 및 우수한 성적을 통한 높아진 군의 위상을 널리알리고 홍보하는 계기마련

창 단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같은법 제15조(선수등의 보호·육성), 같은법 제12조 제2항(체육시설의 설치 등 중 장애인체육활동 시책)
- 장애인복지법 제26조(복지연구 등의 진흥중 장애인의 재활체육 진흥)

창 단 방 침

- 장애인 대표 스포츠단으로 육성, 장애인스포츠의 대표성 부여

원본대조필 

- 지역 장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유도 및 휠체어 테니스의 저변확대
- 생활체육 활성화와 조기정착 유도
- 각종 대회의 적극적인 참가로 지역홍보 및 이미지 제고



기존 실업정구부와 연계 달성군 홍보대사로의 역할 수행

팀구성 및 선수현황

- 팀 구 성 : 6명
- 감독 1, 코치 1, 선수 4(남 2, 여 2)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선수경력	비 고
감독	정 정 립	'71. 3. 19	20년	대구휠체어테니스협회 회장 달성군생활체육협의회 이사
코 치	이 성 모	'80. 8. 10	15년	두류테니스장 개인강사 휠체어테니스선수 코치

- 선수 프로필 및 경기성적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선수경력	'05년도 주요 경기성적
남	오 상 호	'80. 5. 12	4년 3월	국가대표, 국제대회 준우승, 3위 입상, 세계랭킹 12위
	안 국 성	'74. 2. 26	5년 5월	국가대표, 국내대회 우승 3회
여	홍 영 숙	'68. 1. 10	10년 3월	국가대표, 국제대회 우승 6회, 2위 2회, 세계랭킹 2위
	박 주 연	'80. 5. 26	4년	국제대회 준우승 국내대회 2위, 3위 각 2회

원본대조필



※ 장애인 실업팀 현황

- 농 구 : 대구시청, 안산시청, 고양시청, 무궁화전자, 제주도청
대전시청, 서귀포시 등
- 사 격 : 청주시청, 국민은행
- 마라톤 : 삼성카드, LG전자
- 테니스 : 강서구청, 한국고용촉진공단, 전주시청 등 8개팀

※ 2006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체육현황

- 문화관광부내 전담부서 설치운영 : 장애인체육과
- 대한장애인체육회 본격 활동
- 장애인우수선수연금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 일반선수와 명칭통일 및 일반선수의 80%수준으로 상향(기존 60%)
- 세계선수권대회 참가종목 확대 : 2005년 10개 ⇒ 2006년 15개 종목
- 장애인선수도, 국가대표로 인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2조제1항)
- 체육시설의 접근성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강구 (국민체육진흥법)

휠체어 테니스 체육활동 현황

- 전국 활동인구 : 27개클럽 262명
 - 전문체육(엘리트) 활동 및 장애인 생활체육으로 활동
 - 자생 스포츠단체 또는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 중
- 연간 국·내외 대회 개최현황
 - 국 내 :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회장기 대회 등, 연간 4회
 - 국 제 : 재팬오픈대회 등 연간 5회

원본대조필

예산소요액 판단(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 요 액	내 용	비 고
계	233,176		
인 건 비	129,636	감독 1, 코치 1, 선수 4 연봉 (A급 1, B급 1, C급 2)	
장 비 비	21,540	라켓, 시합구, 휠체어 등 연습 및 대회참가 용품 구입	
코트사용료	2,400	대회참가 연습용 코트	
대회출전비	21,600	국내 및 국제대회	
우수선수 장 려 금	25,000	우수선수 스카웃비	
일반운영비	30,000	식비, 간식비, 목욕비 등	
기 타	3,000	상해보험가입비, 의료비 등	

※ 창단 익년도 추가 예산소요 부분

- 숙 소, 대회참가 전용차량(장애인용 특수차량)
- 연습장(경기장)의 경우 부지확보 및 사업추진에 상당한 시일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두류테니스 코트를 임차하여 연습장으로 사용
- 장애인 휠체어테니스 경기의 경우 해외출전 경기가 많아 대회출전비의 추가 소요가 예상됨

원본대조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각종 대회참가시 지역홍보 및 이미지 제고
- 지역 장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활발한 참여분위기 조성
-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시책의 다변화 도모
- 지역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및 의욕 고취로 더불어 함께사는 지역사회 건설
-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으로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군의 이미지 홍보효과 제고

향후 추진계획

- 2006. 6월 : 달성군청 휠체어테니스단 창단계획
- 2006. 7월 : 대한장애인체육회 실업팀 등록
- 2006. 9월 : 운영예산 확보(제2회 추경시)
- 2006. 9월 : 달성군청 장애인 휠체어테니스단 관리운영지침 조례제정
- 2006. 9월 : 전국장애인 체전 참가(군대표로 최초 참가)

원본대조필

문서번호	문화체육과-4813
생산년도	2006. 6. 14.
보존년한	5년

담당자	과 장	국 장	부군수	군 수	결
배추현	김서환	김민희	이승우	박정호	재
협조	서무담당 김민우 총무과장 윤광수 체육담당 안영환				

達城郡廳 휠체어 테니스단



創團式 行事 計劃

達 城 郡

원본대조필

휠체어 테니스단 창단식 행사 계획

국내 최초인 달성군청 휠체어 테니스단 창단식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 전국 장애인들에게 무한의 자긍심과 가능성을 고취시키고 영남발전을 선도하는 달성군의 국·내외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코자 함

추진방침

- ☐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 추진 - 격려와 ~~홍원~~의 자리
-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인사 초청으로 장애인들의 자긍심 및 삶의 의욕 고취
- ☐ 전국 최초의 실업팀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내외 홍보에 역점
-  달성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수단 유니폼, 용품 등 규격 및 로그 통일

팀구성 및 선수현황

○ 팀 구 성 : 6명

· 감독 1, 코치 1, 선수 4(남 2, 여 2)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선수경력	비 고
감 독	정 정 립	'71. 3. 19	20년	대구휠체어테니스협회 회장 달성군생활체육협의회 이사
코 치	김 선 종	'80. 1. 25	15년	구미시청 테니스 선수, 한국 테니스지도자아카데미(KPTA)코치

원본대조필



○ 선수 프로필 및 경기성적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선수경력	'05년도 주요 경기성적
남	오상호	'80. 5. 12	4년 3월	국가대표, 국제대회 우승 2회, 준우승 3회, 국내대회 우승 1회
	안국성	'74. 2. 26	5년 5월	국제대회 우승 5회, 준우승 2회 국내대회 우승 6회
여	홍영숙	'68. 1. 10	10년 3월	국가대표, 국제대회 우승 6회, 준우승 2회, 세계랭킹 9위
	박주연	'80. 5. 26	4년	국제대회 준우승 국내대회 2위, 3위 각 2회

행사개요

□ 일시 : 2006. 6. 23(금) 15:30 예정

□ 장소 : 군청 대회의실(행정동 1층)

□ 참석인원 : 120명 정도

○ 초청인사 62명(명단별첨)

○ 본청 간부, 사업소장, 읍·면장, 관계자 등 30명

○ 군실업정구부 감독 및 선수 9명

○ 기타 휠체어 테니스단 감독 및 선수가족 등 19명

※ 초청인사 현황

[전국] : 7명

- 대한장애인체육협회 회장, 전국휠체어테니스협회장,
-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회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 전석복지재단대표이사,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촉진이사

원본대조필



[군단위 기관단체장] : 32명

- 군 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군의원(10), 농협군지부장, 산림조합장, 축협장, 달성우체국장, 한전 남대구지점장, KT&G 지점장, KT지점장, 건강보험공단 지사장,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달성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시의원(2), 민주평통회장, 8251부대 7대대장, 지적공사 지사장, 환경시설관리공사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군단위 사회단체장 등 기타] : 21명

- 군생활체육협의회장, 체육회 수석부회장, 문화원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새마을운동군지회장, 새마을지도자군협의회장, 군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군재향군인회장, 자유총연맹군지부장, 대한노인회군지회장, 자연보호협의회장, 청소년지도협의회장, 농촌지도자협의회장, 농업경영인연합회장, 생활개선회장, BBS군지부장, 자원봉사회장, 한국노총달성지부장, 청년회의소회장, 라이온스클럽회장

[군단위 장애인단체 대표 등] : 2명

- 지체장애인협회 군지회장,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지회장

□ 주요 행사내용

[1부 행사]

- 내빈소개, 국민의례, 경과보고, 감독 및 선수소개, 식 사, 축 사, 격려사, 단기수여, 폐 식
- 기념촬영, 언론사 인터뷰 등

[2부 행사]

- 장 소 : 군청 구내식당(복지동 3층)
- 참석대상 : 창단식 참석자 전원
- 내 용 : 참석자 상호간 인사, 선수 및 관계자 격려, 다과회

원본대조필

행사진행순서

구 분	시 간(분)		참 가 자	비 고
내빈소개	15:30~15:33	3	문화체육과장	
국민의례	15:33~15:35	2	사회자 : 문화체육과장	
경과보고	15:35~15:40	5	행정관리국장	
감독 및 선수소개	15:40~15:45	5	문화체육과장	
식 사	15:45~15:50	5	군 수	
축 사	15:50~15:55	5	군의회 의장	
격 려 사	15:55~16:05	10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한국휠체어테니스협회장	
단기수여 및 꽃다발 증정	16:05~16:10	5	군 수	
축 가	16:10~16:15	5	달성군합창단	
폐 식	16:15			
기념촬영	16:15~16:30	15		
2부 : 다과회	16:30	60	구내식당	120명 정 도

※ 기타사항

- 행사전 휠체어 테니스단 관련 영상물 상영(5분 정도)
- 폐식 후(1부 행사후) 꽃다발, 기념품 등 전달 및 기념촬영 실시

원본대조필

세부추진일정

추진내용	수량	추진일정	담당자	비고
○ 초청장 발송 - 초청대상자 명단작성 및 발송 - 참석여부 파악	70매	6. 14. 6. 22.	문화체육과 "	
○ 군수님 축하	2부	6. 20.	총무과	총무과
○ 사회시나리오	2부	"	문화체육과	
○ 보도자료 작성 배부	1부	"	문화체육과	기획감사담당관
○ 경과보고서 및 감독, 선수 소개서	2부	"	"	
○ 행사장 준비 · 현판, 식순 제작 설치 · 꽃수반 및 꽃사지 · 마이크 및 연대 · 사진촬영(유선방송녹화)	각 1점 20개 각 2개	6. 22. " " 6. 23.	문화체육과 " " 기획감사담당관실	꽃수반 1 꽃사지 19 푸른방송
○ 행사장 · 행사장, 주차장 안내 · 내빈 및 참석자 좌석 안내	2명 3명	6. 23. "	문화체육과 "	안내직원 정장착용
○ 단 기	1점	6. 22.	문화체육과	
○ 다과회 주문예약	120인분	6. 20.	문화체육과	구내식당

원본대조필



현판, 식순(안)

2006. 6. 23(금)

경

장애인 휠체어 테니스단 창단

축

달 성 군 

-	-	-	-	-	-	-	-	-	-
폐	단	격	축	식	감	경	국	내	식
	기				독	과	민	빈	
		려			및	보	의	소	
	수				선				순
					수				
					소				
식	여	사	사	사	개	고	례	개	

선수단 복장

- ☐ 상 하 의 : 체육복(달성군 로고 및 달성군청 휠체어테니스단 명시)
- ☐ 기타 휠체어, 운동화 등

원본대조필



장애인 휠체어테니스단 창단식 초청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직위(명)	주소	연락처	비고
1	장항숙	대한장애인 체육회 회장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7 올림픽웨딩문화센터 1층	02)208-1511	138-829
2	배기선	한국휠체어테 니스협회회장 국회의원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114번지	031)909-0557	410-814
3	박성태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논공읍 남리 573-2 평광아파트 506/607	사)615-0001 자)614-0069	711-852
4	정태일	"	화원읍 천내리 창신맨션 104동 504호	자)633-1521	711-761
5	표명찬	군의회 의장	화원읍 천내리 330-7 덕화빌라 101호	635-0117 634-0117	711-835
6	방종영	군의회 부회장	구지면 창리 429	615-4907 614-4838	711-891
7	정종태	군 의원	화원읍 성산리 560-32	631-9114 631-0567	711-832
8	김판조	"	논공읍 남리 578-4	641-7075 615-8844	711-852
9	이근선	"	다사읍 매곡리 동서아파트 101/103	585-3825 592-3839	711-812
10	도원길	"	다사읍 서재리 화진금봉 타운 103/503	585-7795 593-8700	711-766
11	배도순	"	가창면 대일리 610	768-5383 760-7457	711-862

원본대조필 

연번	성명	직위(명)	주소	연락처	비고
12	박노설	군의원	하빈면 하산리 630	581-0757	711-823
13	김삼도	"	옥포면 기세리 969-24	614-4209	711-842
14	유판호	"	현풍면 중리 345-3 정평빌라 A동 301호	616-5900	711-881
15	성중도	"	유가면 본말리 902	616-5900	711-881
16	차중열	달성경찰서장	현풍면 중리 321-1	614-9208	711-873
17	우재봉	달성소방서장	현풍면 원교리 407	616-0119	711-874
18	조상희	농협달성군 지부장	달서구 송현동 194-2	621-5151	704-822
19	박원희	달성군 축협장	현풍면 하리 120-2	616-6205	711-874
20	김명길	달성군 산림조합장	남구 대명11동 1142-4	656-0652	705-813
21	조병우	달성산업단지 관리공단이사장	논공읍 복리 1-11	616-6500	711-857
22	차준용	달성군생활체 육협의회회장	현풍면 하리 128-1	615-1122	711-874
23	박중석	군체육회 수석부회장	현풍면 중리 261	614-2485	711-873
24	서효섭	달성교육청 교육장	남구 대명10동 1600-7	650-8787	705-815
25	도록수	민주평통 군협의회회장	하빈면 현내리 832-11	582-6692	711-822
26	박찬식	8251부대 7대대 대대장	논공읍 금포리 사서함 1호	611-4113	711-851
27	박금규	달성우체국장	현풍면 원교리 94	614-0004	711-870
28	이장호	한국전력 남대구지점장	화원읍 천내리 340	630-2200	711-835

원본대조필

연번	성명	직위(명)	주소	연락처	비고
29	최부영	KT&G 달성지점장	현풍면 원교리 1109	614-2786	711-874
30	김영목	KT 달성지점장	현풍면 중리 341	611-0007	711-873
31	남태섭	국민건강보험 달성지사장	화원읍 천내리 256-2	641-3607	711-835
32	유갑중	한국농촌공사 달성지사장	남구 대명3동 2289-2	625-2010	705-823
33	전상호	달성문화원장	현풍면 부리 353	611-0010	711-872
34	장명진	달성군 종합 사회복지관장	논공읍 복리 1-104	615-9191	711-857
35	김순호	새마을운동 군지회장	다사읍 서재리 279	641-6361	711-813
36	이재진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	화원읍 설화리 755	631-8927	711-833
37	이정분	군새마을 부녀회장	화원읍 구라리 910	632-0702	711-831
38	김기석	바르게살기 군협의회장	화원읍 구라리 1687 삼우청솔 103/908	641-9960	711-756
39	이종찬	군재향군인회장	현풍면 부리 440	614-2124	711-872
40	배사돌	자유총연맹 군지부장	옥포면 신당리 1173	615-8400	711-843
41	이수환	대한노인회 군지회장	논공읍 삼리리 266	616-2837	711-843

원본대조필

연번	성명	직위(명)	주소	연락처	비고
42	김성제	자연보호 군협의회장	논공읍 금포리 1307	611-1991	711-851
43	배종호	군청소년지도 협의회장	논공읍 금포리 2047	616-2000	711-851
44	황해철	농촌지도자 군협의회장	하빈면 봉촌리 194	582-0023	711-823
45	김항권	군농업경영인 연합회장	화원읍 설화리 959	631-8690	711-833
46	김정옥	군생활개선 회장	다사읍 이천리 480	668-3198	711-811
47	정우선	지체장애인협 회 군지회장	현풍면 성하리 229-1	615-0090	711-811
48	서정돌	BBS군지부장	논공읍 금포리 943	611-5900	711-851
49	이병수	군여성자원 봉사회장	유가면 금리 365	011-365- 8142	711-882
50	곽진환	시각장애인연 합회 군지회장	유가면 유곡리 379	011-827- 3184	711-882
51	박헌기	대한지적공사 달성지사장	화원읍 천내리 38-5 유평빌딩 6층	632-3942	711-834
52	정동준	환경시설관리공 사달성사업소장	논공읍 남리 471-2	614-5446	711-852
53	권태훈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장	현풍면 부리 248	614-6650	711-872
54	서정삼	달성군청년 회의소장	현풍면 부리 503-1	615-6116	711-872
55	김석환	달성라이온스 클럽 회장	논공읍 금포리 1502-7	611-1685	711-851

일본대조필

연번	성명	직위(명)	주소	연락처	비고
56	최창주	한국노총 달성지부장	논공읍 북리 1-104	583-5536	711-857
57	김창환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동구 신암5동 산 26번지	954-0170	701-015
58	박은수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이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1	031-728- 7001~3	463-939
59	여운재	전석복지재단 대표이사	달서구 두류 1동 776-8	652-8074	704-906
60	정순천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중구 동인 3가 361-1 미주빌딩 10층	422-8007	700-423
61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고용촉진이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1	031-728- 7001~3	463-939
		-	이 하 여 백	-	

원본대조필



초대합니다

푸르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휠체어 테니스단」을
아래와 같이 창단하게 되어 소중한 시간에 귀하를 모시고자 합니다.

꼭 참석 하시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6. 6. 23(금) 15:30

■ 장 소 : 달성군청 대회의실(행정동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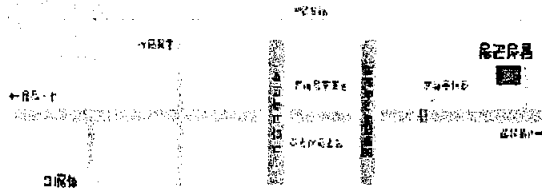
2006. 6.

달성군수 박 경 호

힘 찬 달 성

박 은 마 래

원본대조필



장애인 휠체어 테니스단

장애인 휠체어 테니스단



초 청 장

원본대조필

문서번호	문화체육과-2092
생산년도	2006. 8. 29.
보존년한	5년

담당자	과 장	국 장	부군수	군 수	결
비주현	김세환	김영환	이종진		재
협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조	기획담당	인사담당			
	체육담당	예산담당			

대구광역시 달성군 휠체어 테니스단
관리운영지침 제정(안)

달 성 군

원본대조필 

대구광역시달성군휠체어테니스단관리운영지침 제정

제정사유

- 대구광역시달성군휠체어테니스단이 2006. 6월 23일 창단됨에 따라 감독 및 코치, 선수들이 군의 명예와 위상을 전세계로 알릴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 휠체어 테니스단에 대한 설치 및 조직, 인사 및 복무, 처우, 합숙소 설치·운영, 기타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운영지침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휠체어테니스단 육성관리를 도모코자 함.

주요골자

- 달성군청 휠체어테니스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관련규정의 설치근거와 설치목적을 명시하고 조직으로는 단장(부군수), 부단장(문화체육과장), 부장(담당 6급), 지도자 2명(감독 1, 코치 1), 선수 4명(남·여 각 2명)으로 팀을 구성하였으며
-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을 준용한 임면과 복무규정에 관한 세부 관련조항을 명시하여 휠체어 테니스단 운영의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 처우의 경우 보수는 연봉제로 하여 총연봉액을 12월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토록 하였으며 연봉의 인상은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매년 초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차후 휠체어테니스단 운영이 활성화 되고 전국적으로 실업팀이 활발하게 창단되었을 경우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입상보상, 연봉인상 등을 적극 검토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갈 계획이다.

원본대조필 

- 또한 선수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급식비, 용품비,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지원금 지급, 특식비, 경기장 사용료, 합숙소 설치·운영, 대회참가 및 전지·특별훈련 실시시 경비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입단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
- 이밖에도 부상시 의료비지원, 퇴직시의 퇴직금 지급, 훈련 및 경기도중에 발생하는 부상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경기에 전념토록 하였다.
-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의 기준을 명시하여 선수들에 동기부여를 통한 경기력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 기타 휠체어 테니스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보완점 등은 팀운영의 활성화와 타 자치단체 및 기업체에서 팀창단자 계속하여 추가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휠체어 테니스단의 운영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 가칭 “달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 통합된 규정을 마련하여 팀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원본대조필

대구광역시달성군훈령 제268 호

대구광역시달성군휠체어테니스단관리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6년 8 월 20 일

달 성 군 수 이 중 진 

대구광역시달성군휠체어테니스단관리운영지침

1. 설치 및 조직

가. 설치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및 제12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5조(선수등의 보호·육성)
같은법 시행령제17조(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장애인복지법제26조(복지연구 등의 진흥)

나. 설치목적

- ☐ 지역체육의 진흥과 직장체육의 활성화 도모
- ☐ 직장운동 경기부의 우수한 경기력을 통한 달성군의 명예를 국
내외 선양
- ☐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시책의 다변화 도모
- ☐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및 의욕 고취로 더불어 함
께 사는 사회건설
- ☐ 장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활발한 참여
분위기 조성

원본대조필 

다. 조 직

☐ 임 원 : 당연직 3명

○ 단 장 : 부 군 수

○ 부단장 : 문화체육과장

○ 부 장 : 휠체어테니스단 담당 6급

☐ 지도자 : 2명(감독 1, 코치 1)

☐ 선 수 : 4명 이내(남·여 각각 1/2)

※ 휠체어 테니스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독 및 코치는 비장애인으로 임면한다.

라. 임 무

☐ 단장은 팀을 대표하고 선수단 운영을 총괄 지휘한다.

☐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 부장은 선수발굴, 육성 및 훈련, 대회출전 등 선수단 운영에 대하여 총괄 지휘한다.

☐ 지도자는 선수들의 직접적인 관리와 훈련 지도를 담당한다.

2. 인사 및 복무

가. 임 면

1) 임면권자 : 지도자 및 선수 임면권은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면한다.

2) 임면요건 :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을 준용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단장이 심사 결정한다.

3) 임면신분 : 위 축 직

4) 임면기간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1년 단위로 위축 임용)하되 계속 임용되는 선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본대조필

5) 지도자 및 선수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입단계약서 및 입단신청서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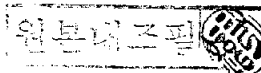
- 입단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이력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1부
- 경기실적증명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한국휠체어테니스협회
확인) 1부
- 이적 동의서 1부
- 명함판사진 1매

6) 선수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
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 임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 자의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 단장이 판단할 때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없고 선수로서의 경기
력이 없거나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때
-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때
- 3년간 계속하여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남·여 단식 및 복
식 우승성적이 없을 때 또는 선수로서 팀에 기여도가 거의 없
다고 판단될 때



- 정원 또는 예산감축으로 팀운영 규모를 축소하고 감원방침이 결정되었을 때
- 지도자의 의견으로 선수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또는 사고, 노쇠로 인하여 훈련 및 경기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기타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 복 무

1) 선수의 의무

- 성실의 의무 : 선수는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품위유지의 의무 : 선수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복종의 의무 : 선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기타 의무 : 근무중 음주,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동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근 무

- 지도자 및 선수는 임용된 날로부터 지도자의 근무시간 계획 및 연간 월체어 테니스단 운영계획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서의 단체근무를 하여야 한다
- 지도자는 매년 연간 월체어 테니스단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원본대조필

- 복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한 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 3) 휴 무 : 지도자의 훈련계획 및 대회출전 계획에 의거 휴무일을 지정하며 월중 휴무일수는 7일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지도자는 월체어 테니스단 운영계획을 제출할 때 휴무계획을 동시에 제출한다.
- 4) 연 가 : 지도자 및 선수는 연간 20일 범위내에서 연가를 득할 수 있다.
- 5) 병 가
 - 지도자 및 선수는 질병, 부상 등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년 2개월 간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득할 수 있다.
 - 병가일수가 3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6) 특별휴가
 - 지도자 및 선수가 전국규모 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 1회 7일의 범위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도자 및 선수는 경조사시에 공무원 경조사 휴가규정을 준용한다.

3. 처 우

가. 보 수

- 1) 지도자 및 선수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총연봉액수를 12월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 2) 지도자 및 선수의 연봉 및 월급여액은 전년도 국·내외 경기참가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별표1]과 같이 확정한다.

일본대조필

- 3) 총연봉의 인상은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었을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적정분을 인상한다.

나. 등급 및 배점 결정

- 1) 선수의 등급은 매년 1월초에 전년도 전국규모대회 이상 참가 입상실적에 따라 [별표2]에 의거 산출한 선수별 총배점을 기준으로 [별표3]과 같이, 상위 1명, 중위 2명, 하위 1명을 각각 A, B, C등급으로 결정하되, 선수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인원을 균등 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단, 신규임용 선수의 등급은 입단시에 C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대표급선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 전국규모 이상 각종대회 입상성적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한다.
- 3) 신규로 임용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배점은 지도자 및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 선수는 30점, 고등학교 졸업이하 선수는 25점으로 배점을 정한다.
- 4) 년도중 경기성적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선수는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단장권한으로 배점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 5) 년도중 임용된 선수의 익년도 배점은 입단 당시의 배점과 입단 후 성적을 감안하여 단장이 결정한다.

다. 지원보상

- 1) 지도자 및 선수의 후생복리와 용품지원을 위하여 급식비와 용품비를 지급하되 급식비는 매월 초에 지급하며 용품비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간 지급액의 50%를 1월과 7월초에 각각 사전에 지급한다.

원본대조필

- 2) 급식비와 용품비의 월 지급액은 [별표4]와 같으며 연도별 인상 조정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장이 결정한다.
- 3) 단장은 각종 장비 및 피복비는 물론 팀이 필요로 하는 일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 4) 지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정보·섭외활동에 필요한 우수선수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지원금 또는 정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5) 지도자 및 선수의 사기양양과 견문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진체육의 시찰 및 견학을 실시 할 수 있다.
- 6) 지도자 및 선수의 기초체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7) 합숙소가 설치되기 전까지 지역연고가 없는 타지역 영입선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숙박비와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지급액은 단장이 결정한다.

라. 입상 포상금 지급

- 1) 군수는 선수가 국제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타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 3) 입상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의 인상 또는 조정은 단장이 결정한다.

마. 대회참가 및 전지, 특별훈련 실시 등에 대한 경비지원

- 휠체어 테니스단의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에 따른 소요경비는 공무원 국내·외 여비규정에 준하는 실비기준 산출 금액 (예비비 등 포함)을 단장이 결정하여 보상, 지급한다.

원본대조필

- 국제대회 참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회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매년 년초에 단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단,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참가 할 수 있다.

바. 우수선수 입단전 보상

- 1) 국가대표급 우수선수를 확보, 입단케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단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입단전 보상금은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 단장이 결정한다.
- 3) 입단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에 준한다
 - 입단 직전에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자
 - 입단전 최근 1년간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종목에 2회이상 우승한 자
 - 이상과 같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 경기장 사용료 지급

- 1) 선수들의 훈련(전지훈련, 특별훈련 포함)을 위하여 사용하는 훈련장에 대하여는 해당 경기장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에서 규정한 전용사용료(또는 일일사용료)를 지급한다.
- 2) 단, 자체 훈련장 건설 및 사용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의 료 비

- 지도자 및 선수가 훈련중 또는 경기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 상해보험

- 지도자 및 선수가 훈련중 또는 경기중 부상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단위로 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원본대조필

- 상해보험 가입의 경우 경기종목, 선수의 신체적 특성, 훈련 및 대회참가시 부상위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카. 4대보험

- 지도자 및 선수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입단과 동시에 4대 보험에 가입한다.
- 여기서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타. 퇴 직 금

- 1) 지도자 및 선수로 입단하여 복무하여 온 자가 퇴직한 때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 퇴직금 = (총근무일수/365) × 월평균보수액
 - 월평균보수액 = 기본급여 × (18/12)
 - 총근무일수는 임용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일수를 말한다.
 - 기본급여는 퇴직일이 속해있는 전월에 지급된 기본급여액을 말한다.
- 2) 퇴직자는 퇴직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한다.
- 3)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자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고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4) 입단후 1년 미만된 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5)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원본대조필

4. 합숙소 설치·운영

- 타지역 출신 임용선수의 거처 활용과 휠체어 테니스단의 결속 및 합숙훈련 등, 특별훈련의 원만한 실시와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운영한다.

단, 기혼인 선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합숙소 설치·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합숙소 임차 및 위치변경 등은 단장이 결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 전용합숙소를 건립하기전의 합숙소는 훈련장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는 25~33평 규모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확보한다.
 - 선수의 합숙생활 보조를 위하여 선수 보호자 1인을 둘 수 있고 월급여액은 [별표1]과 같다.
 - 선수 보호자 채용은 『대구광역시달성군상근인력관리규정』을 따른다.
 - 합숙소 운영에 소요되는 전화사용료를 제외한 공공요금과 관리비 등은 단장이 지급한다.
 - 합숙소 생활용품 이외의 합숙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과 비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장이 구입 또는 제작, 설치한다.
 - 기타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결정한다.
- 합숙소에서 거주하는 지도자 및 선수는 깨끗이 합숙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손괴 등으로 인한 소유주와의 분쟁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 단장은 합숙소 운영시 장애인들에 맞는 내부시설 개조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본대조필

[합숙소 기본생활 물품]

- 냉장고 1점, 에어컨 1점, 컬러텔레비전 1점, 세탁기 1점, 가스 레인지 1점, 전화기 1점, 식탁 및 의자 1식

5. 실업팀 등록

-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규정에 의거 한국휠체어테니스협회를 통하여 실업팀에 등록한다.
- 감독, 코치, 선수의 변동시에는 그 변경사항(인적사항 포함)을 대한장애인체육회(한국휠체어테니스협회)에 즉시 통보한다.
- 단장은 한국휠체어테니스협회 등록비를 매년 예산에 확보 지급하여야 한다.
- 기타 장애인관련 체육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각종 대회 등에 적극 협조한다.

6. 차량구입 · 운영

- 지도자 및 선수의 훈련 및 대회참가에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승합용 차량(개조된 특수차량)을 구입 · 운영한다.
- 차량의 종합적인 관리는 다음의 담당자가 맡는다.
 - 정 - 부 장, 부 - 휠체어테니스단 담당자
- 전용차량의 유류구입, 고장시 수리, 기타 소모품 구입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제적 운영을 위한 차량운행일지, 차량유류수불대장,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차량구입 ·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성군관용차량관리규칙』을 따른다.

원본대조필

7. 준 용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인사관리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며 기타 일반사항은 군의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다.

8. 기 타

- 본 지침에서 전국대회라 함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한국휠체어테니스협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를 말하며, 국제대회라 함은 국제테니스연맹의 공인된 대회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한국대표로 참가하는 대회 및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 선수로 참가하는 대회를 말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본대조필

(별지 제1호 서식)

입 단 계 약 서

달성군월채어테니스단 운영기관장인 달성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본 월채어 테니스단에 입단하는 ○○○를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조한다.

제1조 : “을”은 달성군 휠체어 테니스단 〇〇〇으로 입단한다.

제2조 :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보수를 재직기간동안 지급한다.

○ 연 봉 액 : 원(매월 원씩 지급)

○ 훈련지도수당 : 원

○ 기 타 : 급식비, 용품비, 특식비, 포상수당은 별도지급

※ 단, 익년도 연봉은 달성군 월체어 테니스단 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재조정 지급한다.

제3조 : 제2조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 지급한다.

제4조 : 계약기간은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 : “을”은 재직기간동안 “대구광역시달성군휠체어테니스단관리
운영지침”과 “갑”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의사에 따른다. 본 계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단장 입회하에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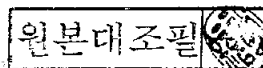
이
의
의

“갑” 달 성 군 수 : (인)

“음”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제2호 서식)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달성군휠체어테니스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별	연 락 처		연 령	세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과 년) 졸업·재학		
경 력	근 무 기 간		직 위	근 무 처	
	부터	까지			
주 요 경기실적	※ 별지 기재가능				

달성군수 귀하

의본대조필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달성군휠체어테니스단 선수로 보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이며, 특히 다음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할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소속 상사의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때
3. 국·내외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 이상 훈련에 불참한 때
5. 주 3회 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 조퇴한 때
6. 무단으로 합숙소 및 훈련장을 이탈하였을 때
7. 기타 여하를 불문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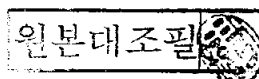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퇴 직 금 지 금 청 구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재 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퇴직금청구액					
산 출 내 역					
상기와 같이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 참고사항 】 ○ 퇴 직 금 = (총 재직일수 / 365일) × 월 평균보수액 ○ 월 평균보수액 = 기본급여 × 18/12 ○ 기본급여 = 퇴직일이 속해있는 전월에 지급된 기본급여액					

일본대조필



【 별표 1 】

초임 기본급여 월지금액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적용기준)	상 위	중 위	하 위	비 고
임용직책				
감독	29,400,000(월 2,450,000)			
코치	22,080,000(월 1,840,000)			
선수	20,400,000 (월 1,700,000)	18,000,000 (월 1,500,000)	16,800,000 (월 1,400,000)	
선수보호자	12,000,000(월 1,000,000)			

※ 감독, 코치, 선수의 연봉인상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 범위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신규위촉직에 대하여도 “가”급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 별표 2 】

각종대회 입상성적별 배점기준

구 분	우 승(금)	준우승(은)	3 위(동)	비 고
국제대회	8 점	6 점	4 점	
장애인 체전	7 점	5 점	3 점	
전국규모대회	6 점	4 점	2 점	

원본대조필

【 별표 3 】

선수등급 결정기준

구 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비 고
년간 개인별 배점기준	상위 1명	중위 2명	하위 1명	

※ 등급사정일 현재, 선수결원시에는 최상위 등급부터 인원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등급을 정하며, 신규 또는 년도중 임용되는 선수는 C등급으로 한다.

【 별표 4 】

급식비·용품비 월지급 기준

구 분	감독·코치	선 수	산 출 기 초	비 고
급 식 비	405,000원	405,000원	4,500원×3식×30일	
용 품 비	100,000원	100,000원		

【 별표 5 】

입상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금(1위)	은(2위)	동(3위)	비 고
국 제 대 회	500,000	400,000	300,000	
전국장애인체전	300,000	200,000	100,000	
전 국 규 모 대 회	200,000	150,000	100,000	

※ 국제대회라 함은 국제테니스연맹(ITF)에서 공인한 국제대회를 말한다.

※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2개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액의 50%를 지급한다.

※ 지도자는 해당종목 선수중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선수와 같이 한다.

원본대조필 